

신청기관 : 병무청

독일에서의 양심에 따른 전쟁복무 거부 신청절차와 그 효과

한인호

독일 트리어대학 박사과정

I. 들어가는 글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 이후 독일은 동·서독으로 분단되고 과거 서독이었던 독일 연방공화국은 독자적인 군대를 가질 수 없었다. 1955년 재무장에 대한 논의를 통해 1956년 7월 21일 병역법(Wehrpflichtgesetz)이 발효되었고 1957년 4월 1일 새로운 병역법에 따른 첫 징집이 실시 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도입된 일반 병역의무는 2011년 병역법이 폐지될 때까지 존재하였다. 한편 독일 정부는 제 3제국⁰¹을 통한 뼈저린 경험으로부터 양심에 따른 집총 전쟁복무의 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신념적 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에서의 양심에 따른 전쟁복무 거부(독일어 명칭 Kriegsdienstverweigerung 줄여서 KDV)권의 실행절차 전반과 대체복무에 대하여 살펴본다.

II. 집총 전쟁복무 거부의 법률적 근거

독일에서 병역의무의 법률적 근거는 연방헌법 제12a조 제1항과 위에서 이미 언급한 병역법이다. 독일 헌법 제12a조는 제 1항에서 “--남자(들)는(은) 만 18세부터 군대나 국경

⁰¹ 이른바 ‘наци’ 독일로 알려진 1933년에서 1945년 제 2차 세계대전 패전까지, 아돌프 히틀러를 수반으로 하는 민족 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집권했던 시대를 나타냄.

수비대 또는 민간수비대에 복무할 의무를 질 수 있다.”⁰²라고 일반적 병역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독일 병역법 제1조는 병역의무자로서, 만 18세 이상의 모든 독일 남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 집총 전쟁복무 거부의 법률적 근거는 우선 연방헌법 제4조, 구체적으로는 제4조 제3항을 들 수 있다. 현행 독일 연방헌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믿음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와 세계관의 자유는 불가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서 제3항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집총 전쟁복무를 강요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이어서 “자세한 것은 연방법률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으로 집총 징집을 부정하고 있다. 다만 연방헌법 제12a조 제2항⁰³에서는 양심에 따른 집총 전쟁복무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집총 전쟁복무 거부를 통해 “집총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 받기 위한 신청절차는 “양심의 이유에 따른 집총 전쟁복무 거부에 관한 법률(das Gesetz über die Verweigerung des Kriegsdienstes mit der Waffe aus Gewissensgründen- KDVG)”과 “군인법(das Soldatengesetz (SG))”에서 규정하고 있다.

III. 집총 전쟁복무 거부 신청 시기

병역의무를 아직 치르지 않은 사람은 만 18세가 되기 6개월 전부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청자의 의사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KDVG 제2조 4 항). 다만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다 1년 앞서 만 17세가 되기 6개월 전(만 16세 6개월)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KDVG 제2조 제5항)

- ㄱ) 조기 대체복무 신청을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경우
- ㄴ) 대체복무법(Gesetz ü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Zivildienstgesetz – ZDG) 제14c조 제1항에 따른 대체(의무)복무 초안을 첨부한 경우 및 이와 같은 대체(의무)복무에 동의한다는 법정 대리인의 의사표시를 첨부한 경우

⁰² 독일 헌법은 일반적 병역의무를 “-할 수 있다.”는 가능 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의 도입과 철회를 헌법의 개정 없이 간단히 연방의회의 다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⁰³ 연방헌법 제12a조 제2항: 양심에 따라 집총 전쟁복무를 거부한 자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질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복무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세한 것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군이나 국경수비대와는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를 규정한 법률로 정한다.

- ㄷ) 대체복무법 제14c조 제3항에 따른 당사자가 대체복무의무를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된 이후 마치기를 원하는 의사표시를 첨부한 경우

위에 해당 사항이 없는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청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즉, 징집 전이나 복무 중이거나 구애됨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IV. 전쟁복무 거부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

KDVG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양심적 이유에서 집총 전쟁복무(이하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병역”으로 칭함) 거부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들을 포함하여 신청해야 한다.

1) 헌법 제4조 제3항을 근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신청서

병역거부 신청은 본문 3의 제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가) 신청자의 이름
- 나) 신청자 주소
- 다) 신청자 개인등록번호
- 라) 자필 서명
- 마) 자신의 병역 거부신청이 “누구도 자신의 양심에 반해 집총 전쟁복무를 강요 받지 않는다”는 연방헌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한다는 의사표시, 예를 들면 “본인은 연방헌법 제4조 제3항에 의거하여 집총 전쟁복무를 거부합니다”와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기술이 없는 신청서는 요식의 흠결에 따라 유효하지 않으며 기각된다.⁰⁴

⁰⁴ 신청자가 증가하면서 이 내용이 미리 인쇄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게 됨

2) 시간적으로 빠짐없는 도표형 이력서

병역거부신청서에는 하자 없고 시간적으로 빠짐없는 도표형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즉, 이력서에는 태어나서 현재까지의 기록이 비는 시간 없이 기록되어야 하며 학력 및 직업교육과 직업적 경력이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한다.

3) 양심적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상세 이유서

병역거부신청서에는 양심의 이유에서 병역거부 결정에 이르게 된 개인적이고 상세한 진술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와 같은 결정동기에 대한 진술은, 왜 병역을 양심의 이유에서 수행할 수 없는지 상세하고 진실하며 인정(이해)할 수 있게 서술되어야 한다. 특히 어떠한 심사숙고와 통찰력과 생각, 사건 또는 어떠한 부정적 경험 등을 통해 신청자가 그러한 결정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집총 전쟁복무(병역)에 참여하는 것이 신청자로 하여금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가 되며 그와 같은 결정이 피할 수 없는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신청자는 신청자 개인이나 신청자의 행동(품행)에 대하여 제 3자가 작성한 서면 의견서나 평가서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신청자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할 수 있다(KDVG 제2조 제3항).

V. 신청서의 수신자

병역 거부신청을 위한 특정한 행정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전쟁복무거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연방군 커리어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VI. 신청서의 접수와 의견 청취

신청자의 병역거부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처에 도달하면 접수처는 접수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현역 군인의 경우 관할 군 접수처(커리어센터)는 신청서류

가 접수된 후 관할 징계(인사)위원회 담당자에게 신청서 접수 사실을 통지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받는다. 그 밖에도 신청자를 담당하는 인사관리처로부터 의견서를 받는다.

VII. 신청서에 대한 심의 기관

관할 지방병무청(접수처)은 접수된 신청서류와 의견서 및 개인기록부를 퀼른에 있는 연방 가족 및 시민사회 업무청(이하 BAFzA)으로 심의를 위해 보내며, BAFzA의 담당자는 첨부된 서류 내용에 의거하여 전쟁복무거부 신청의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BAFzA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신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자가 작성한 개인적 이유서의 세부 내용이나 근거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을 한다. BAFzA는 신청자의 (신청서)기재내용에 대해 의심되는 점이 있는 경우, 신청자로 하여금 1개월 이내에 의심되는 부분을 서면으로 보충 소명하거나 기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서면 청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BAFzA는 구두로 질문할 수 있다(구두 청문). 구두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담당 기관은 청문의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교회나 공법적 법인인 종교단체로부터 위임 받은 자는 청문 시에 무급으로 신청자를 대리할 수 있다(KDVG 제8조). 또한 구두 청문에 응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필수적 경비가 발생한 경우 신청자는 그 경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고용인(직장인)이 구두 청문에 참석할 경우 사용자는 결근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피고용인(직장인)이 아니고, (신청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나 자영업이 (신청자)자신을 대신할 사람을 반드시 배치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 대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발생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BAFzA는 신청서의 심사에 있어서 신청자의 (신청서)기재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존재하고 그러한 의심이 신원조회서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연방 중앙 등록법 제31조에 의거 신원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원조회를 요청한 경우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위에 열거한 이상의 사실 확인 조치는 실시되지 않는다(KDVG 제6조).

VIII. 인정과 반려

1. 신청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집총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된다.

- ㄱ) 신청에 험결이 없이 법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ㄴ) 신청이유서에 진술한 이유가 전쟁복무거부의 권리(권리를 주장하는데 적합한 경우)
- ㄷ) 제출한 실제적 전체내용과 담당 연방청에 확인된 그 밖의 사실들이 신청자에 대하여 진실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소명되었거나 (동 법)제6조에 따른 청문의 결과 더 이상 의심이 없는 경우

신청자가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되면 신청자에게 전쟁복무 거부자(이하 병역 거부자) 인정서가 서면으로 우편을 통해 통지된다. 병역 거부자 인정 결정은 취소(변복)될 수 없다.

병역 거부자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실제 BAFzA의 설명에 따르면, 단순히 병역의 이행, 즉 궁극적인 전쟁 복무가 자신의 양심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혹은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만으로는 병역 거부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믿는 종교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거나(살인을 혀락하는 종교가 어디 있으랴 만은) 혹은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죽이면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다거나 하는 등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과거 동·서독이 분단되었던 시대에는, 동족 혹은 동독에 살고 있는 일가 친척에 총부리를 겨눌 수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신청자의, 병역 거부에 이르게 되기까지 양심 혹은 신념의 형성과정에 대한 기술이 신뢰할 만한가 하는 것과 또한 병역의 이행 즉, 궁극적으로 전쟁에서의 살상행위가 신청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인격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중요하다고 한다.

신청서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현역 군인의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며, 신청자가 병역의무자로서 현재 소집통보를 받았거나 또는 결원에 대한 대체로서 긴급 소집될 수 있다는 서면 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우선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군사훈련에 소집명령을 받은 예비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KDVG 제4조).

2. BAFzA는 아래의 경우 신청을 거부하게 된다(KDVG 제7조).

- ㄱ) 신청서가 형식상 완전히 구비되지 않고 신청자가 BAFzA가 지정한 1개월의 기간 안에 신청서의 완전한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 ㄴ) 신청서에 기술된 전쟁복무거부권에 이르게 된 이유가 서면 청문과 특별한 경우 구두 청문에 의해 명확히 소명되지 못한 경우
- ㄷ) 서면 또는 구두 청문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기재사항이나 진술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이 해소되지 않은 경우

한편 신청서는 모두 구비하였으나 신청자가 구두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BAFzA는 제출된 서면 내용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IX. 신청의 효과

신청자는 전쟁복무거부를 신청한 순간부터 집총복무를 위한 소집이 면제된다. 즉, 이미 소집된 신청자는 신청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될 때까지 소집의 효력이 정지되며 아직 소집명령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소집이 면제된다. 하지만 KDVG 제2조에 따른 신청이 징집대상자 명부에 등록되는 것이나 또는 명부에 등록된 내용에 따른 징집명령에 응해야 할 의무를 면제하지는 않는다(KDVG 제3조 제1항). 즉 징집명부의 등재나 그에 따른 소집명령은 신청서와 별개로 진행되며 그에 따른 당사자의 행정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이 (최종적으로) 취소 불능하게 거절되었거나 또는 신청이 철회된 시점부터 기본병역을 위한 소집이 허용된다. 병역의무자가 신청서 제출 시점 이전에 이미 소집된 경우 또는 결원에 대한 대체로서 단기간에 (급히) 소집될 수 있다는 통지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현역 복무 중인 자가 신청에 의해 병역 거부자로 인정되면 군인법에 따라 복무에서 해고된다. 징계위원회 담당자가 신청자에 신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나 혹은 병역 거부자로 인정 받지 못한 경우, 신청자는 형식이 없는 신청서를 통해 집총 없는 업무로의 전환을 신

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청자의 복무의무 자체는 유지되며 심지어 신청자는 근무지 변경(전출)도 감수해야 한다.

X. 인정 심의 절차의 진행 기간

전쟁복무거부 인정 심의 절차는 법률에 규정된 처리기간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통상적으로 수 주에서 몇 개월까지 소요된다. 다만 현재 복무 중인 군인의 신청서는 우선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XI. 이의 신청

전쟁복무거부-신청이 BAFzA에 의해 거부된 경우, 해당 신청자는 1개월 안에 인정 거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적대적) 대치상황이나 전시상황인 경우에는 1주일 이내에 BAFzA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재차 인정이 거부된 경우에 신청자 및 그의 법정 대리인은 행정법원 규정(VwFO) 제66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관할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법정에서 직접 출석하여 인정 거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직접 구두로 소명하여야 한다.

XII. (적대적) 대치상황 및 전시 상황의 경우

집총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된 자라 하더라도 (적대적)대치상황이나 전시 상황에 있어서는 집총 및 교전을 제외한 민간업무에 소집될 수 있다.

XIII. 직업군인 및 기간제 직업군인에 대한 전쟁복무거부의 효과

- ㄱ) 현역 복무 중인 신청자 – 연방군으로부터 해고(제대) 현역 군인에 대한 해고는 일단 최종적으로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을 받은 후에 이루어 진다. 이와 관련된 법률 규정은 군인법 제75조 제6항과 동 법 제46조 제2항 제7호이다.
- ㄴ) 교육비 등 수령한 급부의 반환 및 그 밖의 경제적 효과
전쟁복무 거부자로 인정되어 복무계약으로부터 해고된 자는 신청에 따른 해고 즉, 제대신청에 따른 해고(제대)로 분류되므로 특수한 경우 학업비용이나 직업교육 비용 등 이미 수령한 급부에 대하여 반환이 청구될 수 있다.⁰⁵ 또한 제대 이후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비 및 실업수당도 청구 할 수 없게 되어 바로 사회보장 지원금 수령자로 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XIV. 병역 거부의 결과로서 대체 복무

대체복무의 법률적 근거는 연방헌법 제12a조 제2항⁰⁶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헌법 제4조 제3항과 KDVG에 따라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들에 대하여 대체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961년 4월 (민간)대체복무법(병역거부자들의 민간복무를 위한 법률, 이하 ZDG)이 발효 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 된 이후 “Zivildienst(찌빌딘스트)”라고 알려진 민간부문 대체복무는 병역 거부자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대체복무 형태였다. 이와 같은 병역의 대체로서 민간부문 대체복무는 병역의무가 폐지된 2011년까지 지속되었고 2011년 7월 이후에는 병역의무 폐지와 함께 대체복무의무 또한 폐지되면서 현재에는 자원봉사 형태를 통해 사회, 문화, 환경 분야에서 복무 형태로 사회봉사의 명맥이 유지되고 있다.

⁰⁵ 전쟁복무 거부 직업군인(군의관)에 대한 의과대학 학비 지원금 책임에 관한 판결 VG München, Urteil vom 12.12.2017, Az.: M 21 K 외 다수

⁰⁶ 독일 연방 헌법 제12a조 제2항은 “양심적 이유에서 집총 전쟁복무를 거부하는 자는 대체복무의무를 질 수 있다. 대체복무 기간은 병역 복무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심에 따른 결정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으며 또한 군대 혹은 국경수비대와 관련이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조항은 최근 한국에서 특정 종교의 구성원들이 집총 거부 및 병역 거부와 국방부의 지휘를 받는 기관에서의 대체복무 거부에 대한 독일의 선례적 대응 사례라고 할 수 있다.

XV. 대체복무 의무자의 복무처

대체복무 의무자를 위한 대체복무처는 신청을 통하여 연방 대체복무청으로부터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 및 시설과 대체복무학교 또는 대체복무 그룹 등에 한정되어 있다. 대체복무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기관의 기준은, 사회보장, 사회사업 관련 분야, 환경이나 자연보호 분야 등 사회 영역이나 대체복무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는 기관이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강도가 일반적인 대체복무자들이 복무하는 다른 기관에 비해, 혹은 병역 복무에 비해 현저히 힘든 경우에는 대체복무처로 지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ZDG 제4조 제1항 제2호 참조). 이에 따라 대체복무자들이 일반적으로 근무하는 대체복무처는 병원(대학병원 및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종합병원 등), 청소년회관, 양로원, 장애인 시설, 응급구조단체 등이며 주로 환자나 노인 또는 장애인 돌봄활동이나 운전 혹은 간병 활동 등에 종사한다. 그 밖에도 자연 및 환경 보호 분야에서는 국립공원 등에 배치되어 실질적인 자연보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XVI. 대체복무 기간

독일에서 병역의무가 도입된 이후 2011년 병역의무가 폐지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병역의무에 따른 복무기간 및 대체복무 기간은 때에 따라 동일하지 않았다. 요컨대, 1973년부터 2005년까지는 병역 복무기간보다 대체복무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길었는데 이에 대해, 독일 연방헌법 제12a조 2항에 “..(중략), 대체복무 기간이 병역에 따른 복무기간보다 길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복무기간의 차이는, 요컨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 추가로, 한국의 예비군 훈련에 해당하는 훈련에 동원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형평성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또한 인정되었다.

XVII 대체복무자에 대한 임금

법률은 대체복무자로 하여금 일반 병역복무자와 동일한 임금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고 있다(ZDG 제35조). 즉 금전적 또는 물질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여비나 숙박비, 휴가 등에 있어서도 병역복무자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 대체복무자는 금전적으로 병역복무자에 비해 좀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이는 병역복무자들이 군복, 군화 및 기타 피복이나 관물 및 숙식 제공 등의 월급 외에 물적 급부를 받는데 비해 대체복무자는 그와 같은 물적 급부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급부를 소속 대체복무처가 지불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형평성의 측면에서 병역복무자에 대한 물적 급부를 현금으로 환산한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 2010년 병역 의무에 따른 복무자 급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복무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면서 대체복무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도 2011년부터 대폭 축소 되었는데, 요컨대 처음 3개월은 임금이 1일 9,41 유로 그리고 후반 3개월은 1일 10,18 유로를 받게 되었으며 성탄절 보너스로 알려진 특별지급금은 176,56 유로에서 115,20 유로로 줄었고 소집해제금이라 할 수 있는 일시 지급금은 690,24 유로에서 2011년부터 460,80 유로로砍감되었다. 복무 기간 중 성탄절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복무 마지막 월에 지급된다. 그 외에도 대체복무자는 의복비 명목으로 1일 1.18유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교통비로 Km당 0.51 유로, 최대 월 204 유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처와 대체복무자가 복무 시작 전에 현물 급부를 받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식비 명목으로 1일 최대 7.20 유로가 지급된다. 그 밖에 대체복무자는 병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의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복무 이전에 가입되어 있던 의료보험은 복무기간 중 중지된다. 병역 복무자와 마찬가지로 대체복무자에게도 박물관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할인이 적용되며 대체복무자 증명서는 기차로 집에 갈 경우 연방철도의 기차표로 인정되며 그 밖의 노선 기차표에 대해서는 25% 할인 가격을 적용 받는다.

대체복무자에 지급되는 급료는 일반적으로 매월 15일에 지급되며 대체복무처는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정부로부터 지급되어야 할 금액을 대체복무자에 지급하고 매분기별로 연방정부에 이 금액을 청구하여 정산한다. 대체복무자가 수령하는 급료 및 실비 그리고 소집해제 시 지급되는 소집해제금에 대하여는 세금이 면제된다.

한편 대체복무자는 부여된 임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사전에 허가를 얻어 간단한 부업이나 자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XVIII 근무시간 및 휴가

대체복무자의 근무시간은 근무처의 일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근무처에 확정된 기준 근무시간이 없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연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다. 근무 시작 첫 3개월은 연장근무를 해서는 안되며 그 이후부터는 연장근무가 허용되며 연장근무를 통해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2개월 이내에 휴가(자유시간)로 사용해야 한다. 병원이나 양로원 등 교대근무나 야간근무가 근무처의 일반 근무시간에 속하는 경우 대체복무자에게도 교대근무와 야간근무(20시에서 익일 06시)가 허용된다. 하지만 근무처 직원이 없는 대체복무자(들)만으로 야간 혹은 교대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와 야간근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나 대체 휴가는 허용되지 않지만 교대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추가적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밖에 종전에는 휴가도 연 20일이 주어졌지만 2011년부터 복무기간이 6개월로 축소되면서 월 1일의 휴가가 주어졌다.

병역 복무자와 대체복무자의 주요 차이를 요약해 보면,

- 병역복무자에 대한 병영 생활은 피할 수 없는 요건이지만 대체복무자의 복무처 거주 의무는, 요컨대 자가 거주허가를 통해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매우 흔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자는 정기적인 공동 숙식에 참여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 대체복무자는 병역복무자와는 달리 특별 휴가를 취득한 경우 부업을 영위할 수 있다.
- 대체복무자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긴급 및 응급구조 교육이나 요양보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 병역 복무자와 달리 대체 복무자는 연방 대체복무청에 등록되어 관리된다.

XIX. 병역 거부 취소와 그 효과

병역 복무자가 언제라도 헌법에 따른 집총 전쟁복무 거부의 권리를 주장하고 병역 거부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병역 거부자로 인정되어 대체복무를 수행하는 중에 BAFzA에 병역 거부를 철회할 수 있다. 병역 거부를 철회한 대체 복무자는 수일내에 대체

복무에서 해제되며 즉시 병역의무자로서 소집 절차가 진행된다. 이 때 이미 수행한 대체 복무 기간은 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잔여기간에 대해 병역 복무자로 근무를 하게 된다. 다만 잔여 복무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실제 현역으로 다시 소집되는 사례는 드물었다.

XX. 대체복무의 거부와 그 효과

병역 의무자 및 병역 거부자 인정 신청이 거절된 자는, 한국의 신체검사에 해당하는 검사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독일 군형법 제16조 제1항의 탈영으로 최고 5년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대체복무자에 관한 형벌, 벌금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ZDG 제6장(제52조에서 제70조까지)에 매우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대체복무의무가 있는 자가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혹은 잠적하거나 또는 고의, 과실로 3일 이상 결근할 경우 대체복무법 제52조에 따라 최고 3년까지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연령 초과에 따른 소집해제를 목적으로 소집이나 전시 동원을 회피하기 위해 지정된 대체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혹은 잠적할 경우 대체복무법 제5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지며(제1항) 이를 모의한 경우도 처벌된다(제2항). 이 때 1개월 이내에 계속 근무의 의사로 자수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형이 부과될 수 있다(제3항). 이 밖에도 대체복무법 제6장에서는 업무배치 불복종, 규정 위반 및 징계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⁰⁷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일정 시간 사회봉사를 동반하는 집행유예에 처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XXI. 마치는 글

독일 병역법은 원칙적으로 징집 대상자 혹은 징집 면제자로 구분할 뿐이다. 다시 말하

⁰⁷ 독일 대체복무법 제6장(제52조에서 제70조까지)은 대체복무자에 관한 형벌, 벌금 및 징계규정으로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많아 제한된 원고 분량의 이유로 상세 기술을 생략함.

면 징집 면제 대상자에게는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어 대체복무 등 어떤 별도의 복무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체복무는 징집 대상자 중 병역 거부자로 인정된 사람들을 위한 선택 수단이다. 한편 독일 연방의회는 독일군 내에 병역의무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2004년 징집과 관련된 규정을 완화하여 징집면제나 연기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면제 및 연기 사유가 사라진 이후라도 만 25세가 넘으면 징집 하지 못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징집면제나 연기 사유가 없는 병역의무자도 만 23세가 넘으면 징집할 수 없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독일 병역법은 전과나 중증 정신질환 등의 일반적 면제사유 외에도 매우 다양한 징집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테면 결혼이나, 결혼이 아니더라도 등록된 동거(사실혼 관계) 또는 소집 이전에 이혼 혹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더라도 부양해야 할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며 경찰이 되어도 병역이 면제된다. 그 밖에도 만 30세 이전에 개발원조 기구를 통해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민간 및 재난구조 기관, 예를 들면 자율 소방대, THW(독일의 대표적 재난구조 기구), 적십자 등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우 병역 대체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병역이 면제되며 성직자 또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도 병역이 면제된다. 그 밖에도 과거 나찌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은 사람은 3대 자손까지 병역이 면제되는 등 다양한 면제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른 결과로 2004년 병역법 개정 이후로는 면제 또는 연기 사유가 없는 만 23세까지의 미혼 남성만이 징집 대상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2007년 전반기 통계에 따르면⁰⁸ 신체검사에 소집된 병역의무자 중 54%만이 징집대상자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6%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병역은 물론 대체복무로부터 면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독일에서는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반드시 국가 방위를 위한 병역에 국한되지 않고 민간 대체복무 활성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 사회보장 및 요양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논의되는 병역의무제의 재도입에 있어서는 현대적 시류를 반영하여 기존에 18세 이상의 남성에게만 부과했던 병역의무를 여성에게까지 확대하여 여성을 군 복무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대체복무로써 사회적 공공부문에 일정 기간 복무하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⁰⁸ 2008년 3월 18일 Spiegel Online 기사 참조

비단, 한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종교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의 복잡성과 다양성 속에서, 어떤 사람에겐 의심의 여지없이 당연한 국방의 의무도 어떤 사람에겐 매우 심각한 심사 숙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양심의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권이 인정된 이상 개인의 양심적 결정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현명하고 적절한 대체수단을 제시하는 것은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렇긴 해도, 추측하건대, 앞으로 양심에 따른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매우 빠르게) 증가할 것이고 그에 따라 병역 거부자 인정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관리비용도 비례하여 늘어날 것이다. 게다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병역의무자 감소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도 장기적으로 국방시스템 자체에 대한 미래적 구조변화를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법령집

Grundgesetz mit Kommentierung, Prof. Dr. P. Schade Walhalla Verlag Regensburg 9. Aufl. 2012

ISBN- 978-3-8029-7175-4

Gesetz ueber den Zivildienst der Kriegsdienstverweigerer, Antiphon Verlag Frankfurt 2018, ISBN:

978-3-73140-202-2

Wehrpflichtgesetz, Outlook Verlag Paderborn 1. Aufl. 2012 ISBN: 978-95521-423-4

Soldatengesetz Komentar, F. Weniger, Walhalla Fachverlag Regensburg 2008 ISBN: 978-3-

8029-6469-5

기타 도서

Die Wehrpflicht–Entstehung, Erscheinungsformen und politisch–militärische Wirkung, R.G

Foerster, 1994. R. Oldenbourg Verlag Muenchen ISBN 3-486-56042-5. P. 107– Die

Auseinandersetzung um Die Einfuehrung der Wehrpflicht in der BRD, W. Meier–

Doernberg

Abschied von der Wehrpflicht, Niema Movassat, Grin Verlag 2006. ISBN 978-3-638-66331-1

Ratgeber Zivildienst, M. Keupp, Rowohlt–Taschenbuchverlag 2000.

WehrPflicht, Kriegsdienstverweigerung und Zivildienst, P. Tobiassen/U. Finckh, Zentralstelle KDV

4. Aifl. 1996 ISBN: 392509914, 9783925099144

보도 매체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2011. 2. 28 – Bauplatz Bundeswehr

Berliner Zeitung 2018. 8.11 – Gretchenfrage Union stellte Wehrpflicht nie infrage–dann kam Guttenberg

Legal Tribune Online 2015. 11. 26– Gewissenwandel muss belegt werden.

Bayerischer Rundfunk 2018. 2. 28 – Mehrheit der Deutschen wuenscht sich Zivildienst zurueck.

Hannoversche Allgemeine 2007. 07. 16 – Totale Verweigerung

온라인 참고 문헌

Wikipedia Deutschland – 검색어: “Wehdienst,” “Wehrpflicht,” “Zivildienst,” “Kriegsdienstverweigerung,”